

검토보고서

2024. 4. 16.(화)

검토안건	발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[전문위원 장홍용]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”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4. 4. 2.
- 회부일 : 2024. 4. 3. (의안번호 : 24-50)

2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 관련 규정 개정 및 서울시와 우리 구의 보훈예우수당 병급 제한 규정 삭제 등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시기 조정 및 ‘지역출신’ 용어 삭제
(안 제5조5항)
- 나. 마포구 보훈수당 지급자격 완화(안 제8조1항 및 제10조1항)
- 다. 서울시 보훈수당·마포구 보훈수당 간 병급제한규정 삭제
(안 제10조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입법예고 : 2023. 2. 29. ~ 3. 20.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 관련 규정 개정 및 서울시와 우리 구의 보훈예우수당 병급 제한 규정 삭제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5조제5호 중 “호국·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”을 “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관련 행사 시”로 포상시기를 조정하고,
 - 안 제8조제1항 중 “3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서울시와 마포구 보훈수당 간 병급제한 규정을 삭제하며,
 - 제10조제1항 중 “3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하여 지급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보훈예우수당의 병급제한을 삭제하고 지급자격을 완화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,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복지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
복지정책과	김경숙 (8810)	김희선 (8801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마포구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
- 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 ①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연평균 1억원 미만 예산의 범위에서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확대 대상자에게

병급 가능

※추가 소요예산: 46,560천원(97명×60천원×8개월)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김민음 (☎ 3153-8807)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국가보훈기본법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자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2. 마포구 보훈단체 현황

연번	단체명	회장	회원수	비고
1	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윤석만	477명	신수로 58 마포구 보훈회관
2	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최길순	208명	
3	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하복덕	275명	
4	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이석한	249명	
5	6·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김우춘	435명	
6	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이중성	73명	
7	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고용식	245명	
8	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오경만	254명	
9	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마포구지회	전영복	12명	
계	9개 단체		2,228명	

3. 서울시 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

(단위: 만원)

연 번	구 별	23년 지급액	24년 지급액 (예정)
1	종로구	5	5
2	중구	7	7
3	용산구	5	7
4	성동구	5	5
5	광진구	5	7
6	동대문구	5	6
7	중랑구	5	5
8	성북구	5	5
9	강북구	5	5
10	도봉구	5	6
11	노원구	5	5
12	은평구	5	6
13	서대문구	5	5
14	마포구	5	6
15	양천구	5	5
16	강서구	5	5
17	구로구	5	6
18	금천구	5	6
19	영등포구	6	6
20	동작구	5	6
21	관악구	5	6
22	서초구	7	9
23	강남구	8	8
24	송파구	10	10
25	강동구	5	6

4. 서울시·마포구 보훈수당 지급기준

□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기준

구분	참전명예수당	보훈명예수당	보훈예우수당	생활보조수당	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
지급 대상	6.25, 월남전 참전유공자	생존 애국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19혁명유공자 5.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·공상군경 공상공무원 	국가유공자*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	독립유공자 (손)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%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
대상 인원	37,500명	2명	3,300명	4,100명	4,000명
지원 금액	월 15만원	월 100만원	월 10만원	월 20만원	월 20만원
연령 기준	만 65세 이상	-	만 65세 이상	만 65세 이상	-
주민 등록 기준	1개월	-	1개월	1개월	-
기타 기준	-	-	-	-	*아래요건 모두 충족 ①국가보훈부 독립유공 생활지원금 수급자 ②기준중위소득70%이하인 자 및 기초연금수급자

□ 마포구 보훈수당 지급기준

구분	참전명예수당	보훈명예수당
지급 대상	·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 ·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 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 ·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 ·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 보훈대상자
대상 인원	1,279명	1,807명
지원 금액	월 6만원	
연령 기준	연령기준 없음	
주민등록 기준	마포구 전입 3개월 이상 (2024. 3월 현재)	